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69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김태선·장철민·복기왕

이용우 · 정준호 · 한민수

허 영 · 이훈기 · 김태년

박홍배 • 이학영 • 윤종군

박 정・김주영・김영배

박균택 • 맹성규 • 김남근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등 정화책임자에게 오염된 토양의 개선사업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화책임자의 경우 비용을 핑계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어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피해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 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 합니다(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0조의2(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
	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
	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
	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
	<u> </u>
	3.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u>자</u>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u>자</u>